

GLN(Global Loyalty Network)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하나은행(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Global Loyalty Network(이하 "GLN"이라 합니다) 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회원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GLN 결제 서비스"란 회원이 GLN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GLN회원" (이하 "회원")이란 실명 인증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14세 이상의 개인 회원 중에서 회사 또는 충전수단 관리 제휴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GLN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에 정해진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GLN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 ③ "충전수단 관리 제휴사" (이하 "제휴사")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GLN 결제 서비스를 홍보하고 GLN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이하 "충전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④ "GLN 가맹점 관리 회원사" (이하 "회원사")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GLN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 가맹점을 관리하는 국내외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⑤ "GLN가맹점"(이하 "제휴가맹점")이란 회원사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으로 GLN머니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말합니다.
- ⑥ "GLN머니"란 회원이 직접 충전하거나, 회사 및 제휴사 또는 회원사의 이벤트 등을 통해 적립되어 GLN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⑦ "GLN 결제 서비스 플랫폼" (이하 "GLN플랫폼")이란 회원이 GLN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회사 또는 제휴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서비스 전체를 의미합니다.
- ⑧ "GLN 결제 서비스 인증"이란 GLN 결제 서비스의 부정 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회사 또는 제휴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생체인증, 회원의 보유 계좌비밀번호 인증,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증 등)의 방식을 따릅니다.
- ⑨ "GLN머니 자동결제"란 회원이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GLN머니를 이용한 자동 결제를 신청하고, 이후 회원사 또는 제휴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거래 시 GLN 결제 서비스 인증 절차 없이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⑩ "충전"이란 회원이 회사에 충전수단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회원 계정에 GLN머니를 생성하거나 GLN플랫폼을 통해 제휴사의 충전수단을 GLN머니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⑪ "환급"이란 회원의 청구가 있을 때 회원과 회사간에 약속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미리 대가를 지급한 회원을 대상으로 GLN머니에 기록된 잔액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⑫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회사가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족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GLN플랫폼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통해 제공합니다.
- ②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 2 장 GLN 결제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GLN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GLN플랫폼을 통해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면,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등을 거쳐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 ② 회원 가입은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이를 타인이 대신하게 하거나 가입정보 등을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5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GLN 결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GLN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고객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5. 과거에 본 약관의 위반 등의 사유로 GLN 결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 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6조 (GLN 결제 서비스의 이용)

- ① 회원은 제휴가맹점에서 연중 무휴로 매일 24시간 동안 GLN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GLN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제휴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GLN플랫폼을 통해 안내한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 ③ 회원은 회원사 및 제휴가맹점에서 GLN머니 잔액으로 GLN플랫폼을 통해 GLN 결제 서비스 인증 후 결제하거나 GLN머니 자동결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각 나라 회원사의 제휴가맹점 이용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규약에 따르며, 한국의 외국환 거래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들은 준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사의 현지 법령 준수를 위해서 회원의 정보(국적, 영문이름 등)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GLN머니 보유, 충전, 결제, 환급 등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LN플랫폼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단, 회사는 GLN머니를 이용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GLN머니의 보유, 충전, 결제, 환급 등의 한도를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GLN머니의 충전, 결제, 결제취소, 환급)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0-약관-145호(2020.06.24)

- ① 회원은 회사에 개설된 회원 본인명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제휴사에서 관리하는 충전 수단을 차감하여 전환하는 방식으로 GLN머니를 충전할 수 있으며, 회사 및 제휴사 또는 회원사 등의 이벤트 및 프로모션 참여 등의 방법으로도 GLN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 ②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의 참여로 충전된 GLN머니는 회원이 참여를 취소하는 경우 충전이 취소됩니다. 만약 충전된 GLN머니의 사용으로 인해 취소할 GLN머니가 없을 경우, 회사는 향후 충전 및 적립되는 회원의 GLN머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용 가능한 GLN머니를 보유한 회원은 회원사 및 제휴가맹점에서 GLN 플랫폼을 통해 GLN 결제 서비스 인증 후 결제하거나 GLN머니 자동결제 방식으로 상품 등의 이용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GLN머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제휴가맹점에서는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회사와 회원사 및 제휴가맹점 등이 약정하여 GLN 플랫폼을 통해 안내한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 ④ 회원이 결제한 이후에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제휴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휴가맹점의 GLN머니 처리단말기(온라인 판매자의 경우 온라인결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금액은 GLN머니로 충전됩니다. 단, 일부 제휴가맹점에서의 취소는 회사와 회원사 및 제휴가맹점 등의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GLN플랫폼을 통해 안내한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 ⑤ 회사가 회원사에게 상품 등의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GLN 결제 서비스용 매입율에 의해 미국 달러화(USD)로 환산 후 지급되며, 이 이용대금을 회원에게 청구하는 경우, GLN 결제 서비스용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요청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GLN 매입율 및 매도율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GLN 결제 서비스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원이 GLN머니의 환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선택한 환급 방법에 따라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전환해 주거나 회사에서 개설한 원화 계좌에 입금합니다.

제8조 (GLN 머니)

- ① 회원은 GLN머니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원은 GLN머니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 ③ GLN머니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제9조 (이용 수수료)

- ① 상품 등의 구매 시, 제휴가맹점에 따라 별도의 GLN 결제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GLN플랫폼을 통해 안내한 GLN 결제 서비스 설명서의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이용 수수료가 변경될 경우, 이 약관의 제3조를 준용합니다.

제10조 (거래의 철회)

- ① 회원이 상품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제시한 GLN머니 지급거래 정보가 제휴 가맹점 등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여 거래가 확정되면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거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제휴 가맹점의 단말기 등의 전자적 장치의 조작 오류 등으로 거래 철회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거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거래 확정으로 회사에 대하여 거래를 철회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은 회원사 또는 제휴 가맹점 등 거래 상대방과의 규약에 따른 합의를 통해 거래 철회, 거래취소 등을 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일시 중단)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GLN 결제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회사는 제 1항의 각 호의 사유로 GLN 결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GLN플랫폼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 ① 회원이 GLN 결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GLN플랫폼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의 GLN 결제 서비스 해지 요청 시, 회원은 보유한 GLN머니 잔액이 있는 경우 이용 해지할 수 없으며, 결제 또는 환급을 통해 GLN머니를 소멸시킨 후 이용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GLN머니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GLN 결제 서비스를 즉시 이용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GLN 결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사전 충전한 GLN머니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2. GLN머니가 사고 신고된 경우
- ④ GLN 결제 서비스 인증의 오류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서비스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회사 또는 제휴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GLN 결제 서비스 인증 수단을 재설정하여야 GLN 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⑤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GLN 결제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용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드리며, 10 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4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즉시 해지)
 1.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0-약관-145호(2020.06.24)

운 경우

2. 가입 시 필수 기재사항 등의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거부한 경우
 4. 회원이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5.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6.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 ⑥ 제 5항의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의 확인 요청에 대해 회사가 이용 재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GLN 결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3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회원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은 GLN플랫폼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상품 등 구매시 스스로의 책임하에 상품 등을 구매하며, 회사는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④ 회원은 GLN 결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 칩 등의 분실, 도난 및 서비스 인증 비밀번호 등의 누설 등 사고 발생 시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⑤ 회원은 회사가 GLN 결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회원의 본이 약관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회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회원은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휴사 또는 회원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 (이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수탁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등

제16조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 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법감시인 심사필 제2020-약관-145호(2020.06.24)

근매체를 사용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지한 경우

3.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지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7조 (이의 신청 및 분쟁 처리·조정)

- ① 회원은 GLN 결제 서비스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회원의 가입 경위, 이용 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은 회사의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 GLN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회사가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회사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외국환거래기본약관', 제휴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하나멤버스 등) 이용약관 등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9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 GLN머니 보유, 충전, 결제, 환급 한도

1. 보유

GLN머니의 보유는 200만원까지 가능(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 한도)

2. 충전

『GLN 결제 서비스 설명서』에 따름

3. 결제

『GLN 결제 서비스 설명서』에 따름

4. 환급

『GLN 결제 서비스 설명서』에 따름

- 충전 수단

1.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

2.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 GLN 결제 서비스 매입/매도율은 『GLN 결제 서비스 설명서』에 따름

모든 부칙은 GLN플랫폼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